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02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소병훈·박용갑·용혜인

이수진 · 김예지 · 박지원

김기표 • 안태준 • 정동영

박희승 · 한창민 · 이원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 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 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

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법률 제 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숙인 현황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6년에 실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	제9조(실태조사) ①
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욕	
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	
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	
여 <u>5년</u>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	<u>3년</u>
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
	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